

Korea P&I, 일본 적격보험자 증서취득

오염손해, 선박잔해제거 등 배상책임보험

KP&I는 최근 증서확보를 위해 클럽에 가입해 있는 선박 15척에 대해 우선적으로 일본 요코하마 지방 운수국에 접수시켜 오염손해, 선박잔해제거(wreck removal) 책임 등을 포함한 선주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는 적격보험자로 인정한다는 통보를 1월 25일 교통성 본부로부터 접수하였다고 발표했다.

일본정부는 일본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발생한 선박에 의한 오염사고와 난파선방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본에 기항하는 100 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P&I를 통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무보험선박이거나 적격보험이 아닐 경우 출입항을 금지하는 입법조치를 금년 3월1일부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일본 교통성은 일본법에 의해 설립된 자국 손해보험사와 이른바 국제그룹에 속하는 13개 P&I등 총 36개 보험회사를 적격보험사로 지정하는 고시1463호(2004년 11월 26일자)를 발표하고 지정 보험자 명단에서 제외된 한국, 중국, 러시아 P&I는 물론 독일, 영국등 전세계 관련보험회사들은 일본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보험자로서의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MLIT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법제화 했다.

적격보험자로 지정될 경우 개별 보험증서를 포함 소정의 일건서류를 첨부하여 일본 지방운수국에 신청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교통성이 발행하는 증서를 본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고시로 지정된 36개사에 가입된 선박들도 기항 당시 유효하고 오염손해와 잔해제거책임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가입증서(Entry certificate)를 본선에 비

치하고 있어야 한다.

Korea P&I 에서는 일본정부가 강제보험도입을 법제화 하기 시작한 작년 2월부터 MLIT 와 긴밀한 접촉을 갖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MLIT 본부와 두차례 회의를 통해 상호 입장을 조율한후 적격보험자 통보를 받았으며 증서는 요코하마 지방운수국을 통해 금주 중 발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시행을 불과 1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으나 지정 보험자이외의 P&I 클럽으로 일본교통성의 증서를 취득한 사례는 KP&I 가 사실상 제 1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KP&I 가 일본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증서를 확보한 이면에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KP&I 는 KP&I 가 적격보험자로서 증서를 취득함으로 인해 KP&I 에 가입해 있는 나머지 선박들도 보험가입증서와 함께 신청절차만 거치면 증서를 무난히 취득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선사들이 원할 경우 KP&I에서 대리하여 증서를 취득해 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동시에 KP&I 가입선박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본에 기항당시 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증서를 신청중에 있고 KP&I 에 적정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면(KP&I 의 가입확인서 발급) 당분간 기항상 불이익이 없도록 일본의 관련당국과 사전 논의된 바 있으므로 기항을 앞둔 선박들은 적기에 소정의 절차를 취하도록 하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기에 KP&I 와 접촉하도록 권하고 있다.

특히 IACS(국제선급협회) 이외의 선급에 가입해



있거나 국제적으로 안전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선적 선박은 보험에 가입해 있어라도 선박에 따라 증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으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증서 신청 절차를 밟을 것을 권하고 있다 MLIT의 안내에 의하면 정상적인 경우에도 증서 발급절차가 접수일로부터 1개월가량 소요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적선 외국항에서 보안점검지적 '제로' ISPS Code 시행대비 사전 준비 철저 국적선 245척 보안점검 모두 통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1일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 시행 이후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외국항만에서 국적선 245척에 대해 보안점검이 실시됐으나 1건의 결함지적도 받지 않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써 국적외항선대에 대한 ISPS Code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해양부는 평가했다.

ISPS Code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해상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항해 여객선 및 500톤이상 화물선을 대상으로 국제선박 및 항만의 보안체계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한 국제협약으로써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ISPS Code의 국제 발효를 앞두고 해양부는 해양부 안전정책담당관을 팀장으로 미주항로 운항선사, 한국선주협회 및 한국선급 등 국내외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문제해결팀(Trouble-shooting Team)'을 구성해 외국항만에서 국적선의 ISPS 관련 보안지적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 왔다.

한편, 올해 국내항만에 입항한 외국선박 2271척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결함지적률이 20.7%를 기록했다.

하지만 출항정지 조치를 받은 중대결함 선박은

지난해 7월 7척에서 8·9·10월엔 각 1척, 11·12월엔 1척도 없는 등 시행초기 보다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ISPS Code의 시행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에서 보안지적을 1건도 받지않은 것은 정부와 해운업·단체가 적극 협력해 사전준비와 선박보안을 철저히 시행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적선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우리 해운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